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16

발의연월일: 2020. 6. 30.

발 의 자: 박광온 · 김영주 · 변재일

송갑석 • 백혜련 • 김두관

김진표 • 권칠승 • 이원욱

박 정·전해철·김종민

이낙연 의원(13인)

제안이유

제21대국회 개원을 앞두고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 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법」 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의 필 요성 또한 절실해지고 있음.

이에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의 상시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며, 국회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여 국회 운영을 무력화시키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윤리조사위원회를 신설하여 국회윤리특별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경우 심사에서 제척되는 사유를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고자 함.

특히 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법률안을 소관 위원회가 제출할 수 있 도록 하여 국민입법청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산결산특 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회의 상시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하여 임시회는 매월 1일과 12월 은 정기회 종료 후 3일 이내 집회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30일까지로 함(안 제5조의2제2항).
-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그 소관을 국가의 예산안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안 제37조제1항제18호 신설).
- 다.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국회윤리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및 제3항).
- 라.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의 징계에 관한 안건은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 마.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에 응하고 징계 안건 조사 및 징계 요구 의견 제시를 위하여 국회윤리조사위원 회를 의장 소속으로 설치함(안 제46조의2제1항).

- 바. 국회윤리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대한변호 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의 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을 의장에 게 추천하고,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 8명으 로 구성함(안 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
- 사.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의 회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불출석한 경우 해당 상임위원을 개선할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 아.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2항단서 신설).
- 자.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둘 이상 두도록 하고,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4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안제57조제2항 및 제6항).
- 차. 위원회의 위원이 본인 또는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경우 심사에서 제척되는 사유를 정하고,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3 신설).
- 카.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이 의장이 정한 상임위원회 심사기간 경과 후에 회부된 경우에도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사개시 전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가 있는 때에는 예산 증가또는 새 비목 설치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8

4조제5항 후단).

- 타. 청원 소관 상임위원회는 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제8항 신설).
- 파. 국회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국회의원이 국회의 회의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사유를 신설함(안 제155조제1항제12호나목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본문 중 "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을 "매월 1일(정기회 기간을 제외하며, 12월에는 정기회 종료 후 3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일(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를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에 따른"을 "1월·3월·5월에 집회되는"으로 한다.

다만,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제37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예산결산위원회

- 가. 국가의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에 관한 사항
- 나. 국가의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관 한 사항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중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를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각각 "윤리조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위원의 임기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④ 윤리조사위원회는 제155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안건은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범위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수 있다.
- ⑤ 윤리조사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심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징계에 관한 안건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윤리조사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 다.
- ⑥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의2의 제목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조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를 "자문에 응하고 징계 안건 조사 및 징계 요구 의

전 제시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조사위원회"로, "자문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둔다"를 "의장 소속으로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문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의장이 위촉한다"를 "조사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자문위원회"를 각각 "조사위원회"로, "자문위원"을 각각 "조사위원"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조사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여 의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2인
- 2.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에서 추천한 1인
- 3.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
-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4 인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위원 불출석에 따른 개선) 의장은 상임위원이 국회규칙이 정하는 소속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일수가 회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된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제4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 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 를 하고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할 수 있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2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2회"를 "4회"로 하고, 같은 조제9항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결산위원회"로 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정한 상임위원회는 제외한다. 제5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가 되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친족 관계(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이거나 친족관계였 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에게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5.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 여한 경우
- ② 의장은 위원에게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의원 10인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3조제4항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결산위원회"로 한다.

제83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각 "예산결산위원회"로 한다.

제8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각 "예산결산위원회"로 한다.

제84조제5항 본문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결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항의 심사기간 경과 후에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의 예산안 또는 결산 심사 개시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4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예산 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을 "상임위원회에 회부 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결산위

원회"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위원회의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84조의3 본문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결산위원회"로 한다. 제125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위원회는 본회의에 청원을 부의할 때에 해당 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법률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국회의 회의에 국회규칙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가.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 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일수(이하 "불출석일 수"라 한다)가 회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된 때

② 제1항제12호나목에 따른 불출석일수 산정기준과 방식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6조제3항 중 "사유"를 "사유 및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8호, 제45조, 제57조제9항, 제63조제4항, 제83조의2, 제8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8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
정 등) ① (생 략)	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	②
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u>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u>	1. <u>매월 1일(정기회 기간을 제</u>
<u>6일</u> 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	외하며, 12월에는 정기회 종
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료 후 3일 이내)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	
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	
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	
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2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	
는 30일(8월 16일에 집회하는	- <u>해당 월의 말일까지</u>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	
<u>지)</u> 로 한다. <u><단서 신설></u>	<u>다만, 임시회의</u>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30일로 한다.
3.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	3. <u>1월·3월·5월에 집회되는</u>
중 한 주(週)는 제122조의2에	
따라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한다.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17. (생 략) <u><신 설></u>

② (생략)

-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0명으로 한다. 이 경우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선임한다.
 -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국

-----.

- 1. ~ 17. (현행과 같음)
- 18. 예산결산위원회

가. 국가의 예산안·기금운용
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
업 한도액안에 관한 사항
나. 국가의 세입세출결산·기
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의 건에 관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 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 로 한다.

-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 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 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 다.
-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 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 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44조제1 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원회를 둔다. 구성한다.

<신 설>

-----윤리특별위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6조의2에 따른 <u>윤리심</u> 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 원회는 <u>윤리심사자문위원회</u>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u><신 설></u>

<신 설>

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
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
40조제1항 및 제2항, 제41조제2
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u>윤리조</u>
사위원회
,
④ 윤리조사위원회는 제155조
에 따른 징계에 관한 안건은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
사를 마쳐야 하며, 특별한 사유
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
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1회
에 한하여 30일 이내 범위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u>있다.</u>
⑤ 윤리조사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심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징계에 관한 안건의 심사를 마

<신 설>

⑥ (생략)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 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 의견 제시를-----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 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 ② 조사위원회-----포함한 8명의 <u>자문위</u>원으로 구

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 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 른다.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

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

장이 위촉한다.

치지 못한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윤리조사위원 회의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 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 ⑥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 제46조의2(윤리조사위원회) ① --

-----<u>자</u>문에 응하고 징계 안건 조사 및 징계 요구 -----윤리조사위원회---의장 소속으로 둔다.

------조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 ③ 제2항의 조사위원은 각 교 섭단체 대표의원이 다음 각 호 의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여 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 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 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의원은 <u>자문위원회의 자문</u> ⑤ -----조사위원회---조사 위원이 될 수 없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⑥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자격, 임기 및 자문위원회의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으로 정한다.

<신 설>

Ò	Ŀ	항	다	
		ı '	- 1	

- 1.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 호사협회에서 추천한 2인
 - 2.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에 서 추천한 1인
 - 3.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 의회에서 추천한 1인
 -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4인

4	조사위원	<u> </u>	<u>3</u>	<u> </u>
<u>위원</u>				
			-조사위	<u> 1원</u>
	.			
	-	1 01 01	1	

------조사위원-------조사위원회-----

위원----.

제48조의2(위원 불출석에 따른 개선) 의장은 상임위원이 국회 규칙이 정하는 소속 상임위원 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 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 하여 정한다. <단서 신설>

제53조(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 례회의) ① 상임위원회(소위원 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3월·5월(폐회 중에 한 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한 주 간 정례적으로 개회(이하 "정 례회의"라 한다)한다. 다만, 국 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보위원회 는 3월·5월에 월 1회 이상 개 일수가 회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된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을 개선할 수있다.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 과 같음)

② -----

<u><삭 제></u>

회한다.

② 정례회의는 해당 상임위원 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및 청 원, 그 밖의 안건과 주요 현안 등을 심사한다.

제57조(소위원회) ① (생 략)

- ②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 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u>둘 수 있다</u>. <<u>단서</u> 신설>
- ③ ~ ⑤ (생 략)
-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u>2회</u> 이상 개회한다.
- ⑦·⑧ (생 략)
- ⑨ <u>예산결산특별위원회</u>는 제1 항의 소위원회 외에 심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 러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신 설>

제57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
<u>♦</u>
②
<u>둔다</u> . <u>다만, 각 교섭</u>
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정한
상임위원회는 제외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6
4ুই]
⑦·⑧ (현행과 같음)
⑨ 예산결산위원회
제58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가 되거나 공동 권 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의 관 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당
 사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친족관계(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당

 사자에게 법률자문 또는 손해

 사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 여한 경우 또는 증언이나 감 정을 한 경우
- 5.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 ② 의장은 위원에게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의원 10인의 신청에 따라 제척

제63조(연석회의) ① ~ ③ (생략)

④ 세입예산안과 관련 있는 법 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u>예산</u>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 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 어야 한다.

제83조의2(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u>예산결산특별위원회</u>와의 협의) ① 기획재정부 소관인 재정 관련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는 미리 <u>예산</u>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 1항에 따른 법률안을 심사할 때 20일의 범위에서 협의기간 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

<u>의 결정을 한다.</u>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
<u>다.</u>
제63조(연석회의) ① ~ ③ (현행
과 같음)
4
예산
<u> 결산위원회</u>
<u>.</u>
제83조의2(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와의 협
의) ①
예산결산
위원회
②
예산결산위원회
<u>.</u>

만, <u>예산결산특별위원회</u>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소관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재정 관련 법률안을 예 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심사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④·⑤ (생 략)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 사) ① (생 략)

-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 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 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 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 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 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 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u>예산결산위원회</u>
③ <u>예산결</u>
산위원회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 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산결산위원회
<u>게 단선 단계 면서</u>
③ 예산결산위원회

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 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 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할 때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 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 할당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④ 정보위원회는 제1항과 제2 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국가정 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 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 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 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 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 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 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 원회의 심사로 본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4						
				- <u>예</u> 신	<u> </u> 결신	위원
<u> ই</u>]–						
				<u>à</u>	산결	<u> 산위</u>
<u>원호</u>]					
(5)	<u>예산</u>	결산:	위원:	<u> ই</u>] – –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후단 신설><신 설>

⑥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 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

<단서 삭제> 제7항
의 심사기간 경과 후에 예산결
산위원회 소위원회의 예산안 또
는 결산 심사 개시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위원회의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u>예산결산특</u> <u>별위원회</u>에 회부할 수 있다.

⑦ (생략)

제84조의3(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지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 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또는 결산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① 7 ~ ⑦ (생 략) <신 설>

⑧・⑨ (생략)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 지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예산결산
위원회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84조의3(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u>예산</u>
결산위원회
_.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위원회는 본회의에 청원을
부의할 때에 해당 청원을 처리
하기 위한 법률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u>⑨</u> ・ <u>⑩</u> (현행 제8항 및 제9항
<u>⑨·⑩</u> (현행 제8항 및 제9항 과 같음)

과 같음)
과 같음)
과 같음)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수 있다.

- 1. ~ 11. (생략)
- 12.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

 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13. ~ 16. (생 략) <신 설>

- 1. ~ 11. (현행과 같음)
- 12. 국회의 회의에 국회규칙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

 석하지 아니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가.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 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으로 사용을 받은 후 5일 이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 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 석하지 아니한 일수(이하 "불출석일수"라 한다)가 회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된 때
- 13. ~ 16.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제12호나목에 따른 불 출석일수 산정기준과 방식은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② (생 략)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	쿠) ①
·② (현행과 같음)	
3	
사유 및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

④ ~ ⑦ (현행과 같음)